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10. 5 선고 2022가단224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0. 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10.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21. 11. 2. 접수 제87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4. 27. B와 신용보증원금 9,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20. 4. 27.부터 2021. 4. 26.까지(이후 보증기한을 2022. 4. 26.까지로 변경)로 B의 신용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21. 2. 25. B와 신용보증원금 9,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21. 2. 25.부터 2024. 2. 23.까지로 B의 신용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은행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가.항과 나.항의 신용보증약정을 합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B가 2022. 3. 1.경 C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C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2. 4. 27. C은행에 합계 183,627,5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는 2021. 10.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21. 11. 2. 접수 제8771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에 기하여 B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금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았으므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4개월가량 경과한 가까운 시기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원고가 대위변제하면 구상권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22. 4. 27. C은행에 183,627,538원을 지급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16. 2. 29. 매매거래가격이 9,500만 원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7,000만 원인 사실, B의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본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아래의 피고에 대한 7,000만 원 차용금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있는 사실, 피고가 E조합으로부터 2020. 2. 20. 5,000만 원, 2021. 3. 17. 2,000만 원을 대출받아, B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 피고와 B는 위 7,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사정이 어려워 자신 앞으로 대출이 어렵다고 하여 위와 같이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위 항변 자체로, 피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그 재산이 감소되어 B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의 사해의사, 즉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21. 11. 2. 접수 제8771호로 마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조순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경북 봉화군 F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213.6㎡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61.75㎡

끝.

